|  |  |  |
| --- | --- | --- |
|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세총발[2015]7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무중개 서비스는 납세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가의 조세이익과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단 현단계에도 일부 세무기관, 소수의 세무인력 및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규정을 어기고 세무중개 경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리를 도모하고 소수 세무중개기구들이 이익수수를 통해 세무인력을 포섭하고 대인관계를 이용해 조세집법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무기관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정상적인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세무기관의 당풍염정(黨風廉政·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 및 세무중개 감독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당중앙·국무원의 당풍염정 건설 및 세무중개 서비스 감독관리 요구사항, <공무원법> 및 <조세법률·기율 위반행위 처분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및 세무인력의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세무인력의 아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1) 세무중개기구를 직접 개설하거나 세무중개기구에 지분투자하거나 세무중개기구에 이름을 빌려주거나 세무중개기구에서 겸직(임직)하거나 공인세무사자격증 등 자격증서를 대여(임대)하거나 임의의 이유로 배우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취직을 세무중개기구에 강요하는 행위;  (2) 납세자에게 세무중개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 지정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 지정하는 행위;  (3) 임의의 명목으로 세무중개기구로부터 비용을 정산받거나 수당(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형식으로 경제이익을 취하는 행위;  (4) 세금징수관리권, 검사권, 집법권, 정책해석권 및 행정감독권을 이용하여 중개기구와의 공모하에 관련 자격 인증, 조세 해석 또는 결정 등 행위를 행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세금을 감면·환급·공제받도록 하고 불법이익을 취하는 행위;  (5)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세무중개 경영활동 불법개입 행위.  2. 세무기관 지도층 간부와 관련된 세가지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한다.  (1) 보고제도. 부처급 이상 지도층 간부는 연도별로 제출하는 <지도층 간부 개인 관련사항 보고표>의 "배우자, 자녀의 종업상황", "배우자, 공동거주 자녀의 비상장회사·기업에 대한 투자상황" 및 "배우자, 공동거주 자녀의 자영업체, 개인독자기업 또는 합명기업 설립등기 상황" 항목에 세무중개 경영활동 종사 관련 정보를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 기피제도. 지도층 간부는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본인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조세 업무와 관련된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피해야 하며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관련 중개활동 중단 권유를 거절하거나 지도층 간부 본인이 업무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사직/퇴직 후의 종업제한제도. 지도층 간부는 공직 사직 또는 정년(명예)퇴직 후 3년 내에 본인의 직무 관할 범위에 속했던 지역 또는 업무 범위 내의 세무중개기구에서 겸직(임직)하거나 세무중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제보, 민원처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세무인력 또는 상급 지도층 간부 및 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상기 규정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임면기관 또는 기율검사·감찰기관으로 송치해야 하고 관할권이 있는 임면기관 또는 기율검사·감찰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각 기관의 책임자가 그 업무인력의 규정·기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지·조사처리·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부서가 그 지도책임을 묻는다.  (2) <<세무대리기구 분리 제도개혁 검수표준>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통지>(국세발[1999]48호)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사사무소를 취소시킴과 더불어 주요 지도층 간부와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는다.  (3) 세무중개기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며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세무중개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조세집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세무인력과 세무중개기구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4. 업무 요구사항  (1) 각 급 세무기관은 <국무원 부처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 정리 및 규율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15]31호)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풍염정 건설 및 세무중개 활동 감독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업무의 중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본 지역과 본 기관의 구체 업무조치를 연구 및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세무기관·세무인력과 세무중개기구간의 이익 사슬을 철저히 차단한다.  (2)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중시하고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인사, 기율검사·감찰 및 공인세무사관리 등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감독감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 및 보완하며 세무인력 및 기타 인력에 대한 제보의 접수와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기율검사·감찰부서는 감독·기율집행·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3) 현급 이상 세무기관은 이 통지를 접한 후 최고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부서와 조율하여 정리팀을 구성하고 본 기관의 관련 상황에 대한 자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기관의 자기검사 상황에 대한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법률·기율·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처리해야 한다. 자기검사와 추출검사 업무는 7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각 성 세무기관은 8월 15일 전에 본 지역의 정리상황을 공문의 형식으로 국가세무국(납세서비스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국  2015년 5월 21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严禁违规插手涉税中介经营活动的通知**  税总发〔2015〕75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涉税中介服务作为纳税服务体系的一个重要组成部分，为维护国家税收利益和纳税人合法权益起到了积极作用。但当前还存在个别税务机关、少数税务人员及其配偶、子女及其配偶违规参与涉税中介经营牟取利益，少数涉税中介通过利益输送拉拢税务人员、利用关系违规干预税收执法的问题，损害了税务机关形象，扰乱了税收正常秩序。为落实税务机关党风廉政建设和涉税中介监管的主体责任，根据党中央、国务院有关党风廉政建设和中介服务监管的要求，《公务员法》和《税收违法违纪行为处分规定》等相关规定，现就禁止税务机关和税务人员违规插手涉税中介经营活动有关事项通知如下：  　　 一、税务人员严禁有以下行为  　　（一）直接开办或者投资入股涉税中介，在涉税中介挂名、兼职（任职）或者出借(出租)注册税务师等资格证书，以任何理由强行安置配偶、子女及其配偶在涉税中介机构就业；  　　（二）强制、指定或者变相强制、变相指定纳税人接受涉税中介服务；  　　（三）以任何名目在涉税中介报销费用、领取补贴(补助)或以其他形式取得经济利益；  　　（四）利用税收征管权、检查权、执法权、政策解释权和行政监管权，与中介机构合谋作出有关资格认定、税收解释或决定，使纳税人不缴税、少缴税或减免退抵税，非法获取利益；  　　（五）其他违反规定插手涉税中介经营活动的行为。  　　二、税务机关领导干部落实三项制度  　　（一）报告制度。副处级以上领导干部应在每年度《领导干部个人有关事项报告表》“配偶、子女从业情况”、“配偶、共同生活的子女投资非上市公司、企业的情况”和“配偶、共同生活的子女注册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或者合伙企业的情况”栏中，按要求填报从事涉税中介经营活动的情况；  　　（二）回避制度。领导干部配偶、子女及其配偶在本人管辖的业务范围内从事与税收业务相关的中介活动，应该回避，经劝阻其配偶、子女及其配偶拒不退出或者本人不服从工作调整的，依规进行处理；  　　（三）职后从业限制制度。领导干部辞去公职或者退（离）休后三年内，不得到本人原任职务管辖的地区和业务范围内的涉税中介兼职（任职），或从事涉税中介营利性活动。  　　三、税务机关应切实履行如下职责  　　（一）在举报、信访或检查中发现税务人员或上级领导干部及其配偶、子女及其配偶存在上述违规行为，应当及时将有关材料移送任免机关或者纪检监察部门，由任免机关或者纪检监察部门按照管理权限依法依规处理。各单位负责同志发现其工作人员存在违规违纪行为后不制止、不查处、不报告的，按干部管理权限由相关部门追究领导责任；  　　（二）严格按照《国家税务总局办公厅关于印发〈税务代理机构脱钩改制验收标准〉的通知》（国税发〔1999〕48号）要求开展清查工作，发现不符合脱钩改制要求的税务师事务所，坚决予以撤销并同时追究主要领导和相关责任人的责任；  　　（三）加强涉税中介监管，完善监管制度，强化行业自律，建立信用考评机制，引导涉税中介机构健康发展。严查违规干预税收执法行为，规范税务人员同涉税中介机构的关系。  　　四、工作要求  　　（一）各级税务机关要坚决贯彻《国务院办公厅关于清理规范国务院部门行政审批中介服务的通知》（国办发〔2015〕31号）精神，切实履行党风廉政建设和涉税中介监管的主体责任。明确工作重点和整顿清理目标，研究制定本地区本单位具体工作措施并组织实施，彻底斩断税务机关和人员与涉税中介的利益链条。  　　（二）内外并重强化日常监管。建立和完善人事、纪检监察和注册税务师管理等部门密切配合的监管机制，认真受理并及时核查纳税人及其他人员举报的问题。纪检监察部门要加强监督执纪问责。  　　（三）接本通知后，县以上税务机关应由一把手负责，组织相关部门成立清理小组对本单位的相关情况开展自查。上级税务机关对所属单位的自查情况进行抽查，对违法违纪违规行为实行“零容忍”，发现一起，查处一起。自查与抽查工作在7月底前完成，各省税务机关应于8月15日前将本地区清理的情况以正式文件报国家税务总局（纳税服务司）。    国家税务总局  2015年5月21日 |